

카페테리아 부속건물의 접이식 창호 공사 과업지시서

1. 과업 명칭

카페테리아 부속건물의 접이식 창호공사

2. 과업 목적

우리박물관 카페테리아 부속건물의 환경개선 공사의 일환으로 접이식 창호 공사를 통해 쾌적한 다용도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시설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카페테리아 부속건물의 접이식 창호공사

나. 소요예산 : **₩35,000,000(일금삼천오백만원정)**

다. 예산과목 : 뮤지엄본부-전곡선사박물관-일반관리비-제경비-유지관리비

라. 과업범위 : 붙임의 “접이식 창호 공사에 대한 예정원가조사보고서” 참조

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4일로 한다.

나. 단, 공사완료 후라도 공사와 관련한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 까지 별도 수행 한다.

5. 일반 사항

가. 도급자는 공사과정에서 발주처의 업무협조를 통해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원가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충실하며,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 및 작업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발주처의 과업범위에 대한 현장설명회에서 도급자의 점검, 과업범위, 기타 현장여건에 따른 추가적 사항의 확인누락과 점검과오, 기술적 확인 누락 등의 결함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과정은 문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천연색 사진으로 작업 전, 중, 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시방서는 별도 붙임 없이 일반적 건축 창호공사의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시방서의 적용범위 외적 부분은 공사감독자 관리감독 통하여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바. 내역의 범위 이외에도 사소한 부분의 시공 및 자재는 원가계산서의 경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잡자재비, 공구손료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 아. 공사중 음주, 흡연 등 안전 및 풍기문란 행위 발생시 공사 감독관은 즉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원인 파악 후 재발방지책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보상금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세부 지침

- 가.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 나. 반입된 자재는 내역서에 준하여 입고되도록 하며 부득이 변경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타 업체가 시공 하여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 공사시작 전 손상가능부분에 보양을 철저히 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 라. 특히, 전기공사의 일정 등 전체적 조율은 공정회의를 통하여 조정하며,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의 업무지시에 따라 공정을 관리 하여야 한다.
- 마. 상이한 다수의 공종이 진행함에 따라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순서를 정하여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바.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 전기, 수전 등은 제공하나, 공사와 무관한 전기 및 박물관의 부대설비의 사용은 차후 정산을 통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 사. 본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파손 등의 발생시 원상복구하고 미비시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 아. 천장고의 최소 높이는 2,200MM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자. 천장의 수평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누수 및 외부와의 밀폐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차.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동절기로 인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 카. 기타, 작업과 관련한 소음, 분진 등의 공사 직, 간접적 부분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박물관의 운영에 직접적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독자

본 과업에서 감독자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발주자의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관련서류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착공계, 공정표 및 하자보증증권 등의 계약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9. 현장대리인

감독관과 업무협의를 가능하고 업무지시에 이행 가능하며 본 과업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 등에 업무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전체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0. 하자기간

본 공사 완료 후 하자기간은 1년으로 한다.